

## 17. 노인복지시설 감면

§ 지특법20조 취득세100%, 최저한세 미적용 **농비**

농특세일반적용/감농특 없음

무료 노인복지시설(1호)-취득세100%, 재산세 50% 농비

(1호외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취득세 25% 재산세 25%, 감면분만 농비)

취득세 신고서	고유번호증
취득세 감면신청서	장기요양기관 지정서
매매계약서	운영규정
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	사업계획서
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	평면도

### 취득세 추징 사유

-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(「건축법」에 따른 신축·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)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